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나851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나8517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10249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형원, 조인형

변론 종결 2023. 7. 13.

판결 선고 2023. 9. 21.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10249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9.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은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A, 피고 B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3 내지 7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9.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A과 피고 B은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3 내지 7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의 "D로부터"를 "F로부터"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박영호

판사이원범

판사김지연

별지